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세계관세기구의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 개정내역을 반영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중 일부 품목에 대한 양허관세율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에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 세계관세기구의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HS) 개정내역을 반영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중 일부 양허 관세율을 세분화하고 조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가 중 **곤충**(0410.10-0000), **임상시험 키트**(3006.93-0000), **인증표준물질**(3822.90-0020),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8524.11-5000) 의 품목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적용되는 일반양허세율에 맞게 세분화.

HS CODE	품명	세분화 규격	세율
0410.10-0000	곤충	- 제0208.90-9090호의 것	18.0%
		- 제0210.99-9090호의 것	22.5%
		- 제0410호(칼새둥지와 로열젤리는 제외한다)의 것	19.7%
3006.93-0000	임상시험 키트	- 제1704.90-9000호의 것	19.7%
		- 제2106.90-9099호의 것	54.0%
		- 제2202.99-9000호의 것	26.2%
		- 제3824.99-9090호의 것	6.5%

HS CODE	품명	세분화 규격	세율
3822.90-0020	인증표준물질	- 「관세법」 별표에서 세율이 8퍼센트인 것	8.0%
		- 「관세법」 별표에서 세율이 10퍼센트인 것	10.0%
		- 「관세법」 별표에서 세율이 20퍼센트인 것	20.0%
		- 「관세법」 별표에서 세율이 27퍼센트, 30퍼센트인 것	30.0%
		- 「관세법」 별표에서 세율이 36퍼센트, 40퍼센트인 것	40.0%
		- 「관세법」 별표에서 세율이 50퍼센트인 것	50.0%
		- 사운드트랙만 있는 필름(폭이 3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포지티브 필름(폭이 20밀리미터 초과하고 4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182원/m 또는 6.5%
		- 뉴스용 필름의 것	4원/m 또는 6.5%
		- 편집용 필름(rush),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 풍물만 촬영한 것이나 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한국영화용 필름의 것	26원/m 또는 6.5%
		- 네거티브 합작영화 필름[편집용 필름(rush)을 제외한다]의 것	468원/m 또는 6.5%
		- 포지티브 합작영화 필름[편집용 필름(rush)을 제외한다]의 것	78원/m 또는 6.5%
		- 네거티브 필름(폭이 20밀리미터 초과하고 4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1,092원/m 또는 6.5%
		- 네거티브 필름(폭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1,560원/m 또는 6.5%
		- 포지티브 필름(폭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260원/m 또는 6.5%
		- 사운드트랙만 있는 필름(폭이 35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포지티브 필름(폭이 2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8원/m 또는 6.5%
		- 네거티브 필름(폭이 2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25원/m 또는 6.5%

비고 : 종량세/증가세 병행 기입된 경우 높은 세율 적용

HS CODE	품명	세분화 규격	세율
8524.11-5000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	- 제8531.20-1000호의 것	0.0%
		-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는 액정 디바이스(구동전자장치, 제어전자장치, 백라이트 유닛, 전원공급장치 등이 결합되지 않은것으로 한정한다)(전자계산기용·텔레비전용·모니터용은 제외한다) 및 그 외의 액정 디바이스 (전자계산기용·텔레비전용은 제외한다)의 것	13.0%

| 첨부자료

[붙임 1]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25호)

[붙임 2]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

[붙임 3]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1의 가

| Contact



김동주 관세사

T 032-742-8250
E djkim@esein.co.kr



김재우 관세사

T 070-4353-1522
E jwkim@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